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고 일 준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계획안은 2008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 삭제(제22조제2호)
-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규모 규정 삭제(제22조제3호)

## 4.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재건축사업 시 주택의 공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나목에서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한하여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예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서 규정에서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2006년 12월 22일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하면서 동 조례 제2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임대사업자에게도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임.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2조를 검토한 결과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와같은 규정은 법령위반 조례로서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과 임대사업자 간에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조합원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한 무주택자에게는 주택공급 기회가 상실되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붙임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